

#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

본 협회 조사부

## 1. 제도내용

### 1. 적용대상회사 :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

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

- 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된다. 다만, 해외 현지법인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일지라도 포함되지 않으며, 연도중에 1~1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 부터 적용된다.

### 2. 적용대상거래 : 대규모내부거래

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, 유가증권,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,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임

-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전일의 자본금기준으로 한다. 따라서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.
- 적용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해당된다. 따라서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도 내부거래에 해당된다.
-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
  - ◀ 참고 ▶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(특수관계인의 범위)
    1.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
    2. 동일인 관련자
    3.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
  - ◀ 해설 ▶ 특수관계인에는 동일인,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, 동일인의 친족(혈족8촌, 인척4촌), 계열사의 임원 등이 포함됨
- 자금, 유가증권,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란
  - 자금거래 :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,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.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함.

- 유가증권거래 :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,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.
- 자산거래 :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. 여기에서 자산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(투자자산, 유형자산, 무형자산)을 말하며, 채무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,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함.
-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며, 이사회결의 및 공시를 회피하고자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봄
-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한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에 의함
  - 자금거래 : 실제 거래하는 금액.
  - 유가증권거래 :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. 다만, 주식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
  - 자산거래 : 실제 거래하는 금액. 다만, 부동산임대차거래 등의 경우는 다음 기준 적용
    - 부동산임대차거래 : 보증금과 계약기간동안의 월임대료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
    -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: 보증한도액
    - 보험계약 : 보험료총액

**[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]**

- <문1> 양 거래당사자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, 모두 본 규정에 의해 이사회결의 및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.
- <답>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이사회결의 및 공시의무 부과됨. 따라서 모두 해당되면 양 당사자가, 일방 거래당사자만 해당되면 해당되는 거래당사자만 의무부과됨
- <문2> “특수관계인을 위하여”라는 거래에 대한 예시
- <답>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, CP 등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계열사가 인수하는 경우 등임. 이러한 경우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은 비계열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를 위하여 주식, CP 등을 인수한 것으로 보며, 따라서 내부거래에 해당됨
- 이 경우 공시양식의 거래상대방란에는 거래를 중개한 비금융계열회사를 기재하고, 거래 내역란 중 채권(또는 CP 등)의 발행자란에 계열사를 기재하면 됨
- <문3>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은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회사만 공시의무가 있는데, 공정거래법도 동일한지 여부
- <답> 공정거래법은 대규모내부거래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 따라서 채무보증의 경우 제공받는 회사도 의무부과됨. 이에 대한 공시양식은 상장법인의 공시양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로 양식을 마련하였음
- <문4> 계열사 발행 액면 100억원의 CP를 계열사가 98억원에 인수한 경우, 인수한 계열사의 의무

부과여부

<답> 유가증권의 거래금액 기준은 액면금액이므로 의무부과됨

<문5>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예시

- <답> ① 일정한 거래후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거래
- 채권·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
  - 수익증권이나 기타 유가증권 매입후 중도 환매하거나 만기가 되어 해제하는 경우
  -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수익증권(만기가 없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는 수익증권)의 출금의 경우
- ② 비계열사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
- ③ 어음거래약정(CP거래약정 포함)을 체결하는 경우
- ④ 투신사와 계열증권회사간 수익증권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⑤ 증권회사가 판매한 수익증권 대금을 동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탁한 계열 투신사에게 입금하는 경우
- ⑥ 진성어음이나 매출어음을 할인하는 경우
- 상품·용역거래에 수반되어 발행·유통되는 어음임

<문6> 계열사 A가 회사채 200억원을 발행하고, 이를 계열증권사가 총액 인수한 후, 이를 계열사 B에게 110억, 계열사 C에게 50억, 계열사 D에게 40억을 매각한 경우 계열사 A, B, C, D 및 계열증권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여부

<답> 계열사 A, 계열증권사, 계열사 B :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있음  
계열사 C, D :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

<문7> 2000년 4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해 계속적으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,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는지

<답>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므로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계약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는 새로이 의결할 필요는 없음

### 3.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의무

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또한 그 내역을 공시하여야 하며,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사항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

#### 가. 이사회 의결절차 및 방법

-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나. 공시시기 및 절차

-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, 공시시기의 계산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, 공시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공휴일 익일에 공시한다.
-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수탁기관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『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』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다. 공시내용 및 주요내용의 변경

- 공시내용은 거래목적, 거래대상, 거래상대방, 거래금액 및 조건,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임
-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
  - 공정거래법 해당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 공시사항과 동일한 것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공정거래법만 해당되는 공시사항은 별도로 양식 마련
    - 금융·보험회사의 분기별 공시양식
    - 비금융·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분기별 이사회 의결 내용의 공시양식
    -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대한 공시양식 등
-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다음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함
  - 거래목적, 거래대상, 거래상대방의 변경과 거래금액, 거래단가 등의 20% 이상의 변경 등

라.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

금융·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음. 다만 그 거래내용은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

-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는 금융·보험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,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(정의)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하여 행하는 금융거래행위를 말하며,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 건별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,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

금융·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음. 그러나, 의결결과는 1일 이내에, 집행결과는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

**[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]**

<문1>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되는 사항 예시

<답> ① 계열사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

- 이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계열·비계열사인지 여부를 불문함

②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계열금융사가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

- 유통중인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계열금융사가 단순 중개하는 경우에도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됨

- ③ 채권(회사채, CP 등 유가증권)을 증권사가 계열사와 매매하는 경우
  - 단순 중개의 경우에도 채권매매의 양 당사자중 계열사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됨
- ④ CP 중개·인수·할인 등의 매매행위
- ⑤ 수익증권(주식형·채권형)을 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
  - 또한, 계열투신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을 비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도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함
- ⑥ 초단기수익증권(MMF 등)을 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
- ⑦ 계열 생보사에 종퇴보험, 퇴직보험,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
  - 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함
  - 공시시기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입시점이 아니라 보험계약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함
- ⑧ 풀자금을 차입 또는 대여한 경우
  - 한국자금융중개(주)를 통한 계열회사와의 풀거래도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됨
- ⑨ 투신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 주식·채권을 매입하는 경우

<문2>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, 거래행위별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해당되는 거래행위 예시

- <답> ① 계열사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 
 ② 전환사채를 만기일전에 주식으로 중도 전환하는 경우  
 ③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 
 ④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·임대차하는 경우

<문3> 비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시 수익증권이나 CP 등 수시로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분기별 거래금액(거래한도)을 어느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?

- <답> 원칙적으로 금융상품별(예: 수익증권, CP, 회사채 등)로 대규모내부거래기준을 상회하는 예상 거래건수의 거래금액을 누적 합산한 금액이 거래한도임. 단, 수익증권 중 초단기수익증권(MMF 등)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한도를 잔고금액을 기준으로 함
- 초단기수익증권은 만기가 없는 수익증권으로써 중도환매수수료가 없는 수익증권을 의미함
-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1일 이내에 공시하고, 행위발생시마다 행위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. 그리고, 분기별로 의결한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함

<문4> CP 만기도래시 동일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발행 또는 인수하는 경우, 공시시기 및 거래금

액 산정방법

<답> CP거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임.

따라서 금융사는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공시하고, 비금융사는 행위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. (다만, 이사회 의결은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음)

개별 건당 거래금액은 만기도래후 새로이 발행 또는 인수한 CP액면금액 기준으로 함

다.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상의 공시가 중복되는 경우

- 공정거래법상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#### 4. 수탁기관의 업무

수탁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을 준용함

-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관련기관(공정위, 증권거래소, 증권업협회)에 전송하고,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수탁기관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이 전자문서의 제출방법·절차를 정한 『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』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정 요청할 수 있다.

#### 5. 위반시 제재

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함

-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위반 행위유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행위,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, 대규모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,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
- 상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1억원, 임직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.

※ 『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』은 본지의 '부록' (96면)에 게재하였다.

# 차별적 취급

